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5868(본소), 2023가단68163(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795,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9. 9. 피고로부터 'C고등학교 화장실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0,435,520원, 공사기간 2021. 9. 16.부터 2022. 3. 2.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22. 7. 1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1) 1차 변경(2022. 1. 15.): 건축 터파기공사 중 지하 지장물로 인한 공사중지기간(56일)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2022. 4. 27.까지로 변경

2) 2차 변경(2022. 2. 28.): 동절기 공사중지기간(51일)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2022. 6. 17.까지로 변경

3) 3차 변경(2022. 6. 19.): 코로나19로 인한 자재수급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공사기간을 2022. 7. 17.까지로 변경

4) 4차 변경(2022. 7. 13.):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264,049,370원으로 변경

5) 5차 변경(2022. 7. 13.): 건설폐기물 반영 금액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264,790,370원으로 변경

다. 원고는 2022. 8.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2022. 8. 24. 피고로부터 132,990,600원을 지급받았다.

○ 계약금액 264,790,370원, 감액 8,807,370원, 정산금액 255,983,000원

○ 선급금 지급액 8,000만 원, 기성금(노무) 지급액 42,992,400원

○ 준공정산금액 132,990,60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2차례 중단되는 등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총 29,792,465원의 간접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2. 3. 3.부터 2022. 8. 30.까지 현장소장 급료 24,840,180원

○ 4대 보험 555,240원

○ 식대, 유대, 통행료 및 기타 440만 원

○ 생수대금 16,000원

○ 현장소장 통신비 10만 원

2)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내역은 지하전기배관으로 인한 토공사, 철근콘크리트Y기둥 추가, 강제거푸집, 시스템비계, 모르타르공사, 가설공사(EGI웬스), 벽돌소운반, 타일벽 코너가드, 소형고압블록, 품질시험비, 준공청소비 등이다.

3) 또한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수도광열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원고에게 수도광열비 466,000원을 청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1) 및 2)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9, 3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22. 8. 10. 피고에게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여러 차례 피고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를 통하여 원고의 위 주장내용을 검토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 ③ 원고는, 공사비 증가분이 모두 변경계약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감리자가 그 중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 잘못이고, 따라서 변경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래 약정한 공사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이 있으면 이는 당연히 모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④ 원고는, 위 합의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3)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수도광열비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몰타르 공사비 3,731,010원, 벽돌소운반비 3,868,101원, 코너가드 비용 1,548,725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196,000원을 선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추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전제로 일단 원고의 말을 믿고서 지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각 금원이 원고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경